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러-브증권자투자신탁[주식]**
2. 효력발생일 : 2023 년 3 월 3 일
3. 정정사유 :
 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  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24.73% → 34.02%, 2 등급 → 1 등급 변경)
  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
  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연금계좌 세액공제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위험등급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1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3) 주된 투자대상 국가 현황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24.73%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<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>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34.02%로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나. 과세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연금계좌세액공제>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	나. 과세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연금계좌세액공제>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

	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	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<삭제>
	나. 과세 (6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	나. 과세 (6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. 다만,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<삭제>
[제2부 별첨1]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	1. NH-Amundi 러-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다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③ 주된 투자대상 국가 현황	1. NH-Amundi 러-브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1. 재무정보 1) 요약재무정보 <신설> <신설>	1. 재무정보 1) 요약재무정보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주식의 매매회전율>

	<신설> <신설>	※ 모집합투자기구의 거래비용 및 회전율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주식의 매매회전율>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러-브증권자투자신탁[주식]**
2. 효력발생일 : 2023 년 3 월 3 일
3. 정정사유 :
 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
  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24.73% → 34.02%, 2 등급 → 1 등급 변경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위험등급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2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1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<요약정보>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